
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김준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38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16.

발 의 자 : 김준혁 · 박정현 · 윤준병
남인순 · 김동아 · 박희승
추미애 · 부승찬 · 김문수
이성윤 · 황명선 · 안태준
염태영 · 최혁진 · 서미화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독립유공자의 사진을 이용하여 외모를 비하한 게시글과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한 독립유공자를 희화화하는 영상 등이 SNS에 게시되어 확산된 바 있음.

이처럼 독립유공자를 조롱·희화화하는 게시물은 국민의 건전한 역사인식과 보훈의식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, 「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형법」에 따른 게시글의 삭제 또는 처벌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절한 조치가 어려움.

이에 독립유공자의 비방을 목적으로 한 정보로서 국민의 역사인식과 보훈의식을 저해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·운영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, 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

하도록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이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6조의3 신설 및 제44조제2항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준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8386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장에 제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6조의3(독립유공자 비방 정보 삭제 등 요청)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독립유공자에 대한 비방을 목적으로 한 정보로서 국민의 보훈의식, 역사인식 등을 저해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·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,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해당 정보를 게시한 자 또는 해당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·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, 전송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·운영자 또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(이하 “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”라 한다)에게 그 취급의 거부·정지·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해당 정보의 게시자,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·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·운영자 또는

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, 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는 당해 정보가 삭제되거나 그 취급이 거부·정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국가보훈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그 취급의 거부·제한·정지를 한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·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내용을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·대화방 등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그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.

1. 국가보훈부로부터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
2.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삭제 등의 요청,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4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3의2. 제2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26조의3(독립유공자 비방 정보 삭제 등 요청)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독립유공자에 대한 비방을 목적으로 한 정보로서 국민의 보훈의식, 역사인식 등을 저해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·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,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해당 정보를 게시한 자 또는 해당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·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, 전송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·운영자 또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(이하 “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”라 한다)에게 그 취급의 거부·정</u></p>

지·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해당 정보의 게시자,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·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·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, 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는 당해 정보가 삭제되거나 그 취급이 거부·정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국가보훈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그 취급의 거부·제한·정지를 한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·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내용을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·대화방 등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그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.

제44조(과태료) ① (생략)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~ 3. (생략)

<신설>

4. (생략)

1. 국가보훈부로부터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

2.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삭제 등의 요청,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4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3의2. 제2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
4. (현행과 같음)